
Policy and Law Report _Vol.11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3 ~ 2022.1.9) -

January 10,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2022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4,227억 원을 투자하는 ‘2022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세부 내용으로는 ① 탄소중립·양자기술·첨단 바이오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1.28조원),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 확대(2조 136억원, 전년대비 +2,107억원) ② AI·지능형반도체·6G·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필수전략기술 분야 신규과제 1,687억원 등 ICT 핵심원천기술 R&D 투자(1.04조원) ③ 누리호 2차 발사(‘22.하반기) 및 달 궤도선 발사(‘22.8월), 다양한 위성항법 수요 충족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 본격 착수 ④ 인공지능·우주·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있음 ※ 2022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2022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현황 사업화 3,654억원 - 산학연협력 / 성과활용 / 혁신기업 육성 기본조성 4,597억원 - 과학기술국제화사업(514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3,121억원) - ICT 기반조성사업(962억원) 기초연구 2조 136억원 -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 등 인력양성 2,193.1억원 - 과학기술·ICT인력양성사업 원천연구 3조 2,849억원 - 원천기술개발사업(1조 2,871억원) - ICT 연구개발사업(1조 421억원) - 우주기술(해양극지포함) 개발사업(4,125억원) - ICT 표준화 국제공동연구(412억원) - 거대공공연구개발사업(5,020억원) 총액: 6조 4,227억원 (2021년 7,511억원 대비 약 11.6% 증가)	2022-01-03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2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 매년 1년간, (내용)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주요 분야별 내용은 ① (공급망)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 日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25개 품목* * 폴리머배합용원료(불화폴리이미드 원료), XDA, 수소차(이온교환막 등 2개), 이차전지·섬유(분리막 등 7개), 철강(마그네슘 등 4개), 화학(공업용 요소 등 3개), 이차전지(황산코발트·인조흑연 등 7개) ②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 무관세 적용 - (납사대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 도입 - (내연차)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 (희소금속)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PCB ③ (산업지원)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 지원 - (신산업)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품목 - (주력산업)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 (에너지)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	2022-01-03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2022.7.5. 시행 예정) 최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그간 우리나라는 의료·금융·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더불어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와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제도 관련 규정 마련도 긴요함 이에「개인정보 보호법」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②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함 (제2조)	2022-01-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제5조) ④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제7조 및 제8조) ⑤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 (제9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생성·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⑦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 (제11조 및 제12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과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및 제14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 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장비·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 ⑬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활성화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제25조)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7. 시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입력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1-07
국토교통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1.4. 시행)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2-01-04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7.5. 시행 예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제12조의6) ②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29조의2 및 제41조제4항 신설) ③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에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제31조의2제5항 신설)	2022-01-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④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7.5. 시행 예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속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를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2-01-0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2.7.5. 시행 예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속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를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022-01-04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43의2 및 안 제47의2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방법을 규정 ②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 (안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법 제99조의8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같은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세증명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고 발급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1/7(금)~1/2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로 제출	2022-01-07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익을 손비에 포함하며,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지정방식을 보완하고,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무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 등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대상을 확대하며,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명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2022-01-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① 선급검사용역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형성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 사업주부담금이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함 (안 제44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법인에 추가함 (안 제111조)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을 손비에 포함 (안 제19조) ④ 공익법인 등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안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14항 신설) 2018년 2월 13일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또는 2018년 2월 13일 전에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2022년 2월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10%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포함 (안 제39조제1항제4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소득의 10% 한도로 손비가 인정되는 기부금 대상 시설에 포함함 ⑥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대상법인 확대 (안 제42조제2항)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배당소득의 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에서 5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함 ⑦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안 제95조제5항)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⑧ 조정반 지정 대상 확대 (안 제9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경우도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⑨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신고의무 폐지 (안 제97조의4제5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폐지함 ⑩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규정 보완 (안 제120조의18제2항)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경우에 연결법인내에서 양도손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를 추가함 ⑪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안 제130조제4항)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⑫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정의 및 현황자료 범위 신설 (안 제133조의2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매년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비영업적 기능을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으로 정의하고, 현황자료의 범위를 연락사무소 기본현황, 외국법인 본사 현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⑬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 보완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제129조, 제137조) -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직전 거래까지의 원천징수누적액에서 해당 손실에 상당하는 세액을 차감하고 해당 세액은 외국법인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⑭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안 제155조의2제4항)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1/7(금)~1/2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과세영업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한도금액을 합리화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8.4원/kg를 적용함 (안 제2조의2제1항) ② 과세영업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함 (안 제17조제2항 개정) ③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 (안 제34조제8항) ④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39조 및 별표3 신설) -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함 ※ 의견 제시기간 : 1/7(금)~1/2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2-01-07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량세 대상 주류의 세율에 대해 물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맥주 제조원료에 대한 과실사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맥주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납세 반출시 주류제조자와 실제 반출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2022-01-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①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 (안 제2조) -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한정 ②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안 제7조) -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③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절차 규정 (안 제14조) - 주정도매업자 등이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승인 신청 ④ 주한외국군인 등 전용음식점 면세주류 구입승인절차 규정 (안 제21조) - 면세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주류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주류 구입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면세주류 구입승인 가능 ⑤ 주정에 대한 면세절차 등 규정 (안 제22조) -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생산하는 알코올에 대해서는 제조공정도 등 첨부서류 제출의무 부여 - 면세주정 반출시 신청서에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주정도매업자가 반출시 주정 제조자 등과 연명으로 신청 - ‘공업용 주정’을 ‘공업용 합성주정’으로 명확화 ※ 의견 제시기간 : 1/7(금)~1/14(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정소매업 면허 대상자 규정 (안 제8조) -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도록 함	2022-01-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②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시 계속행위 허용 (안 제12조, 안 제13조) -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상속포기 시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반출·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함 ③ 주류 상표사용 신고 및 용도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위임근거 마련 (안 제18조) - 주류 상표를 사용·변경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의무 부과하고, 국세청장은 가정용 등으로 구분된 주류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④ 주류 운반방법, 주류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설비 사용 등 위임근거 마련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 주류 운반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장소, 운반방법, 운반시설 및 장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시설 및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등에 대해 주류 등의 반출 정치처분을 한 경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등 설비에 봉합을 할 수 있게 함 ⑤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 (안 제28조) - 주정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정 구입시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 ⑥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 (안 제30조) - 자동계수기 사용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 또는 출고 중단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 ⑦ 주류 거래시 금품 제공 금지 의무 관련사항 규정 (안 제41조) -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⑧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 규정 (안 제42조) -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법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안 제43조) -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1/7(금)~1/14(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u>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u>」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제 산식 및 한도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 (제2-11조의2 제2항) -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원화·위안화 거래금액 관련 공제(제1호)는 대고객 거래를 우대하도록 산식을 변경하고, 잔존만기 1년 이하 위안화표시 비예금성부채 잔액에 대한 공제(제2호)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 변경 -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에 대해 원화·미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는 공제 신설(제3호) ②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한도 변경 (제2-11조의2 제4항) -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제금액(동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합에 대한 한도를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 ③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 적용기한 연장 (제2-11조의2 제5항) - 적용기한을 당초 2021 사업연도에서 2023 사업연도로 2년 연장 ④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외국환업무기관 선정 근거 명확화 (제10-20조) - 부담금 공제를 적용받는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및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 선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의견 제시기간 : 1/7(금)~1/27(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로 제출	2022-01-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 (안 제14조의2) -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② 불이익정보 공유시 정보주체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안 제30조의3) - 사전통지일 기준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 의견 제시기간 : 1/7(금)~2/16(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	2022-01-0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1인)」 2020년 8월 5일 시행된 현행법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범죄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 (안 제18조) ②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안 제23조) ③ 통계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를 보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함 (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④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29조의2 신설)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 또는 정보주체 등의 청구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⑥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⑦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도록 함 (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함 (안 제39조의15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	2022-0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명정보 및 양립가능성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약화되어 있는 반면,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의 증가, 데이터의 대규모화, 개인정보 처리의 복잡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등 권리를 신설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의 정비 (안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 -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었던 것을,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정비함 ②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 (안 제15조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제3항·제6항, 제18조제3항·제4항·제7항) - 종전에는 동의를 받을 때에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던 것을,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선함 ③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 정비 (안 제18조제2항제7호) - 종전에는 범죄의 수사목적에 대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하였던 것을,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에서 삭제하여 수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정비함 ④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 확대 (안 제20조) - 종전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선함 ⑤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의 신설 (안 제35조의2)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의 요건 및 금지행위를 정함	2022-0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감독근거규정 신설 (안 제35조의3)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와 관련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보호위원회의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⑦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 신설 (안 제37조의2)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의 적용에 따라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 대상이 될 경우라도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0인)」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5G의 상용화 이후 5G 고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무선 인터넷 속도는 고객들에게 고지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의3 신설 및 안 제104조)	2022-01-03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의원 등 11인)」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됨. 특히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했고,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음. 반면, 유사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유출의 고의성만 입증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2022-01-0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11(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원회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1/14(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2호 발간	
국회도서관	1/11(화)	「현안, 외국에선?」 제27호 발간 -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별첨1] 제392회 국회 임시회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1/10(월) 10:00	제2법안심사소위	타위법 심사
	1/10(월) 14:00	전체회의	법안 심사
문체위	1/11(화) 10:00	전체회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복지위	1/10(월) 10:00	제2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1/10(월) 11:30	전체회의	안건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0(월) 10:00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	송언석 의원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화) 10:00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송옥주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수) 10:00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장철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수) 15:00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윤관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3(목) 10:00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이광재, 조승래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4(금) 10:00	소득보장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4(금) 14:00	수도권쏠림, 어떻게 맞설 것인가? - 도시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서범수 의원실	울산상공 회의소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1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1/7(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1호 발간	
국회도서관	1/5(수)	「금주의 서평」 - ‘로스차일드 이야기’ / 금융산업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입법조사처	1/6(목) 14:00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4(화) 14:00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김영배, 박수영 의원실, 한국행정연구원	의원회관 1소회의실
1/5(수) 14:00	2022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도종환 의원실, (사)한국이벤트협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1/5(수) 14:00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	위성곤, 어기구, 이만희, 이원택, 김정재 의원실 외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